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등록번호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변경 등록 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